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 방 별 정 직 공 무 원 인 사 규 정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 하는 경우에만 공고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나, 부단체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(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포함)로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연속하여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시 부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며, 기타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5.10. . ~ 11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”을 “지방별정직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”를 “법 제63조제2항제4호”로, “한 경우에는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우에”를 “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병가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휴직한 경우에는는”으로, “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”를 “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과 임용기간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의3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.

제14조제2호 중 “직권”을 “징계처분등을 할 때와 직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임용절차) ①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일간신문·공보 또는 정보통신망,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「지방자치법」 제1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임용하는 경우 ② ~ ⑤ (생략)	제7조(임용절차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
제10조(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2항(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)에 따라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) 휴직한 경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지방별정직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0조(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법 제63조제2항제4호- ----- 연속하 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

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(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 <후단 신설>

② (생략)

제14조(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)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

병가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휴직한 경우에는 ---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 이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과 임용기간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7조의3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)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징계처분
등을 할 때와 직권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0